트리븐 김해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55-334-810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6.26.(금)	2026.08.20.(목)	2026.08.25.(화)	2026.08.28.(금)	2026.08.31.(월)	2026.08.31.(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무순위)	O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0.(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1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26.(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7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8.25.(화)	26.08.28.(금)	2026.08.31.(월)	2026.08.31.(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1079)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상남도 김해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6개동 총 398세대 중 잔여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동	호
2026910219	01	155.7796P	155P	155.7796	48.0027	203.7823	96.3194	300.1017	93.0975	1	106	2004
	합계									1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약식 표기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14일 이내	(2027.01.20)	(2027.06.21)	(2027.11.22)	(2028.04.20)	(2028.09.20)	(2029.02.20)	
155P	106	2004	498,377,448	970,202,320	97,020,232	1,565,600,000	10,000,000	68,280,000	156,560,000	156,560,000	156,560,000	156,560,000	156,560,000	156,560,000	547,960,000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사	■ 무순위 (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8.28.(금) ~ 2026.09.06(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8.2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제출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본인과의 관계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2026.08.20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 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 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2026.08.20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소명자료)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대리인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당첨자격 확인 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제출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 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시 공급금액이 6억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견본주택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8.31.(월) 10:00 ~ 16:00**	**트리븐 김해 견본주택**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1079)

※ 당첨자의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부적격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 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전북은행	1013-01-6082977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분양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추가선택 품목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각각 50%)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개정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신탁사)	위탁자	시공사
법인명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일자동차학원	두산에너빌리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15번길 8-15, 5층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22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84611-0020599	194211-0000943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1. 본 공급계약에서 사업주체(신탁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한일자동차학원 및 위탁자 문세라가 부담합니다(이하 [본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과 관련하여 위탁자 ㈜한일자동차학원과 위탁자 문세라를 통칭하여 "시행위탁자"라 하며, 본 모집공고에 따라 "시행위탁자"가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 ㈜한일자동차학원과 위탁자 문세라가 그 의무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신탁법」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와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함).
4. 모든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확인증 발급일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있으며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행위탁자"에게 있습니다.
5.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및 대지급금·차입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분양계약자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모집공고에 규정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9.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분양계약 목적물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신탁계약이 정한 업무범위 내 및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에게 있습니다.
11.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의무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자는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 "시행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분양계약자와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상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및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계약 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는 제외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견본주택 : 트리븐 김해 홈페이지 (http://trivn-doosan-gimhae.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트리븐 김해 견본주택(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1079) / ☏ 055-334-8100